

언론중재와 인권 발표자

강 주 진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중재위원

제 5 공화국헌법 중 특징이 있는 규정이 있다며 그 중의 하나가 제 20 조이다. 동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 5 공화국헌법은 언론 ·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언론침해금지와 이에 대한 피해배상청구권을 규정했으며 언론의 공적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고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언론관계법 즉 신문 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언론윤리위원내법 등이 폐지되고 새로운 언론기본법이라는 단일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인권이란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말한다. 한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도 따지고 보면 간단한 것은 아니다. 생명 보호권이라든지, 자유항유권, 재산보호권, 욕구충족권 등 많은 기본권이 있다. 중세유럽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은 신수권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신수권에 대비되는 인권으로 등장한 것이 자연권이다. 이 자연권사상에서 오는 인권이 천부인권설이다. 이러한 자연권 사상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영국의 로크, 흄스, 프랑스의 루소 등이 있다. 현대민주헌법은 모두 이 자연권을 확보하기위한 국민 스스로의 사회계약문서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헌법은 반드시 국민 모두의 뜻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민주헌법사상이 확립되었고, 입법권도 국민전체의 뜻에 두어야 한다는 대의정치사상이 성립된 것이다. 동양의 고대정치사상에는 하늘에서 인간을 지상에 내려보냈다는 천민사상이 있다. 이 사상에 따르면 천민 중에 유덕한 사람을 군주로 삼고, 유식한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백성을 천민으로 보았고 천민인 까닭에 천성을 부여하였다. 인간이 태어날 때에 하늘(천)이 성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천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서구사회에서 나온 천부인권사상과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 한 인간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인정 받아온 것은 인간이 천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도 소위 정치적 인민(사림)들 사이에서 서구적인 자연권으로서의 인간의 권리이상의 기본권을 인정 받아왔다는 점을 우리는 흔히 간과해 버리기 쉽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란 인간으로서 또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나아가는데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이런 뜻에서 볼

때 알 권리, 표현할 권리와 같은 언론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현대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따라서 그 나라 민주정치의 실현정도 또는 수준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기본권도 절대적일 수는 없고 무제한으로 보장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나의 자유와 욕구와 인격도 중요하지만 남의 자유와 남의 욕구와 남의 인권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인권이 남의 인권과 충돌할 때에는 상호간의 자유, 욕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조정이란 각자의 기본권에 내재적 한계를 설정해서 각자가 제한과 범위축소를 가해서 최대분모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되겠다. 물론 우리가 각자의 자유와 욕구와 인권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사회는 그렇지 못하다. 그것은 이 사회는 나 혼자만이 자유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나의 모든 욕망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남의 욕망도 또한 충족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간의 자유와 욕망이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하긴 위해서는 현보적으로 차선의 사회와 생활방법을 건설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동목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기본권인 인권도 인간의 자유나 욕망이 무제한적일 수 없는 것과 같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타인의기본권과 나의 기본권이 충돌됨이 없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는 이미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정치적 의사와 의견의 형성에 불가결한 기능을 갖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언론기본법 제 1 조는 「언론기본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존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언론기본법은 제 3 조에서 「언론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또 「언론은 폭력 행위든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를 고무 찬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언론의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기본법의 규정 외에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하여 언론의 자유에 한계를 설정해 두고 있다. 언론에 의한 개인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오직 공익을 위한 것이며 사실인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형법 310 조는 규정하고 있으며 또 타인의 명예회복이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허위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불 성립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과의 충돌은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된 현상이다. 표현의 자유와 인간의 명예권 모두 근대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들이지만, 사실상 이 두 권리는 저울대의 양편에 놓여있는 것과 같이 어느 한쪽도 경시하거나 두둔할 수 없는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는 권리들이다. 즉 표현의 자유와 보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되고, 그렇다고 보도의 자유 또한 제한할 수도 없다. 다만 이 두 권리간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켜 조정해 나가느냐는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명예훼손의 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하면 명예훼손이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거나 해치는 혹은 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예훼손은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도 즉 그것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든, 보도내용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명예권과 더불어 프라이버시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무렵인 1890년대를 전후 해서이다. 신문이 황색신문시대를 맞으면서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는 상업성을 띤 기사 즉 성관계 기사나 범죄 기사를 많이 취급하게 되고 또 가십, 스캔들 등 폭로적인 기사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취급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프라이버시권은 절대적이고 무제한적인 권리는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평온한 사생활을 향유하기 위한 귀중한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립하는 권익과의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의 한계를 요약해 보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도 공표가 행해졌음이 필요하며, 명예훼손과는 달리 당사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전달되어 널리 공중에 전달인식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표가 개인의 동의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 이 권리는 본인의 전속적인 것으로 본인 이외의 근친자의 명의로 제소할 수 없으며, 본인의 사망과 더불어 제소권이 소멸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은 극히 최근에 대두된 개념으로서 아직 완전하게 법적 보장을 받는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헌법 제 16조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법규가 미비하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약하기 때문이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한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정정보도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언론과 개인 또는 단체간의 권익충돌을 법정투쟁에 의하지 않더라도 권익충돌을 균형 있게 조정해 나가는데 그 기본역할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중재제도의 설립으로 개인의 인권이 완전히 보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러한 정정보도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언론보도 및 보도자유의 남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만은 사실 일 것이다.

- 일본 중앙대 법학과졸업. 미국 크라포드 대학원 수료.

- 저술 : 「정치학개론」 「정당론」 외 다수

- 현재 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